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2019. 9

1 자활 근로 사업 관련 지침 개정

1 참여대상 관리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자활사업 참여자격 (p.11)	<p>3 자활사업 참여 자격</p> <p>- 참여우선순위</p> <p>①조건부수급자</p> <p>→ ②자활급여 특례자</p> <p>→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p> <p>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p>	<p>3 자활사업 참여 자격</p> <p>- <u>삭제</u></p>
차상위자 선정 관리 (p.27)	<p>2 선정기준</p> <p>● (추가)</p>	<p>2 선정기준</p> <p>● <u>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조치</u></p> <p>* <u>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재산 기준 등 간이상담을 통해 자활사업단 우선 배치</u></p> <p>- <u>시·군·구청장은 통합조사관리팀 자격여부 확인에 따른 기준초과자가 소득, 재산, 여건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계속 가능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태도 등 참여 필요 유무에 대한 의견서 첨부)</u></p>
자활사업 대상 (p.29)	<p>●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지역자활센터 등)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p> <p>- <u>사업수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 참여 조치 불가</u></p>	<p>●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지역자활센터 등)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p> <p>- <u>사업수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 참여 또는 참여 방해 금지</u></p> <p>※ <u>단,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로 승인요청을 의뢰하여 참여 조치 가능</u></p>
자활지원 추진 부서(담당)	<p>1 시·군·구</p> <p>● 자활고용팀</p> <p>- (추가)</p>	<p>1 시·군·구</p> <p>● 자활고용팀</p> <p>- <u>행복e음에 등록된 자활사업</u></p>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 및 기관별 역할 (p.38)		<p><u>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중 미참여자를 발굴하여 유선 연락 등으로 일자리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자활사업 안내</u></p> <p><u>* (시·군·구 담당자) 대상자에게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안내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상세 내용 및 참여절차 소개 →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 조치</u></p> <p><u>**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통합조사팀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 안내 가능</u></p>
조건불이 행처리 절차 (p.41)	<p>3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 중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사전안내 ●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결정처리 요청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안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단, 기존의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p><u>* (추가)</u></p>	<p>3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성실참여 사유 및 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사전안내 <u>* 차상위자 등 일반참여자에게는 불성실 참여사유만 서면으로 사전 안내</u> ●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결정처리 요청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안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단, 기존의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p><u>* 단, 불성실참여 사유가 (성)폭력으로 타 참여자(종사자) 보호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가능</u></p>
조건불이 행처리 절차 (p.41)	<p>6 조건불이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 기존 자활사업 참여 시 (추가) 센터 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성실 참여로 인한 조건불이행 처리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지역 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가능 	<p>6 조건불이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 기존 자활사업 참여 시 (성)폭력 등으로 조건불이행 된 경우 타 참여자(종사자 등) 보호를 위해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이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가능

2 자활사업 프로그램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참여우선 순위삭제 (p.50)	<p>1 참여 대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 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 <u>희망참여자의 참여 우선순위는 기술된 나열순서로 함</u> 	<p>1 참여 대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 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삭제)
Gateway 과정 (p.52)	<p>2 과정 지원체계</p> <p>(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 예산에서 Gateway 과정 전담관리자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eway 사업비는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고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별도 책정 ● 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위탁 계약시 계획 인원)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이상인 경우 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퇴직 전 3개월 간 Gateway 월 평균 참여자 10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배치 - 기존에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하지 않았던 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 신규 채용 불가 ※ 단, 자활사례관리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모두 없는 지역은 위 요건 충족 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신규 채용 가능 ※ <u>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Gateway 전담관리자를 보장기관으로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음</u> - (추가) 	<p>2 과정 지원체계</p> <p>(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 예산에서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eway 사업비는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 (후단삭제) ● 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의 <u>Gateway과정 참여자 최근 3개월 평균 10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배치</u>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퇴직 전 3개월 간 Gateway 월 평균 참여자 10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배치 - (삭제) ※ (삭제) ※ (삭제) - <u>완화된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Gateway 전담관리자는 채용기간을 '20.8.31까지로 함</u> ※ <u>자활도우미가 Gateway 전담관리사 지원 역할 수행 가능</u>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자활근로사업 (운영) (p.58~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참여종료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자 중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참여종료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예정자 (또는 종료자) 중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횟수제한 없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의 인력용역 형태 파견 (p.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지원대상 자활기업을 제외한 일반 영리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불가 -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참여자의 기술습득 지원 등을 위한 인력파견 시, 파견 목적, 대상자, 파견업무 분야, 파견 기간 등을 명시한 인력파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파견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및 파견 업무분야 및 파견 기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파견 계획 승인 및 지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지원대상 자활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을 제외한 일반 영리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불가 - 지원대상 자활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에 참여자의 기술습득 지원 등을 위한 인력파견 시, 파견 목적, 대상자, 파견업무 분야, 파견 기간 등을 명시한 인력파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파견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임을 입증할 서류 및 파견 업무분야 및 파견 기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파견 계획 승인 및 지도·점검 실시
자활근로 예산 (p.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자활사업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p.74)	추가	※ 자활근로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하되, 지역자활센터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자활근로사업 위탁 가능
예비자활기업 (p.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관리 - 매출적립금은 내일키움장려금(10%), 자활기업 창업자금 (80%),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10%)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관리 - 분기별로 사업단 매출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30%)와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70%)로 정산 (19년 4분기부터 적용)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인턴형 자활근로 (p.87~88)	<p>4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p> <p>(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p> <p>가. 인턴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 지원기간: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6월 연장 가능) -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업체에서 6개월 동안만 기술·경력을 쌓을 동안에는 고용유지 약속서를 징구하지 않으나, 6개월을 연장(총 1년)할 경우 고용유지약속서(6개월 이상 고용)을 징구 - 대상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자활기업 등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기간(참여기간)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 5일(1일 8시간)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 가능 ●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선정된 업체와 사업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6월 단위로 하며, <u>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u> - (추가) 	<p>4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p> <p>(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p> <p>가. 인턴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 지원기간: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업체에서 6개월 동안만 기술·경력을 쌓을 동안에는 고용유지 약속서를 징구하지 않으나, 12개월을 연장(총 1년6개월)할 경우 고용유지약속서(6개월 이상 고용)을 징구 ● 대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해당 시·군·구가 승인하는 업체를 말함</u> ※ <u>해당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운영 시설 금지</u> ※ <u>지역자활센터는 선정업체와 사업위탁 계약 체결 후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자활정보시스템 인턴기업관리에 등록해야 함</u> ● 인턴기간(참여기간)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 5일(1일 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 가능 ●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선정된 업체와 사업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6월(최초), 12월(고용확약이 후 추가 계약시) 단위로 하며,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 <u>참여자 인센티브(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해당 금액은 사업위탁계약서에 포함</u>

3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매출 관련 개념 (p.99)	<p>1 매출 관련 개념</p> <p>② <u>매출적립금: 자활근로사업단의 (중략) 최종 정산은 연도말 정산이며, 원 단위는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적립</u></p> <p>③ <u>수익금: 매출액에서 정부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u></p>	<p>1 매출 관련 개념</p> <p>②, ③ 삭제</p>
매출 관리 및 절차 (p.100)	<p>2 매출 관리 및 절차</p> <p>● 매출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의 적립·관리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 - 분기별 매출 결산은 <u>가정산</u> 개념이며, <u>최종 확정</u>은 연말의 정산결과에 따름 (중략)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p>2 매출 관리 및 절차</p> <p>● 매출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의 적립·관리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 - 분기별 매출 결산은 최종 정산 개념이며, 정산 오류 발견시 해당 분기 정정 (중략)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을 정산하여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매출액으로 발생한 이자는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매출 관리 및 절차 (p.101)	<p>2 매출 관리 및 절차</p> <p>● 매출액 등의 관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매출액 발생 이후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은 아래 그림의 순서에 따라 실시</u> 	<p>2 매출 관리 및 절차</p> <p>● 매출액의 관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사업단 매출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30%)와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70%)로 정산 ('19년 4분기부터 적용) - 총매출액 중 직접사업비 비율 구간별로 공제율 적용 *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접사업비는 분기 내에 발생한 매출액을 직접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한함 • (80% 초과) 사업단 총매출에서 직접사업비의 90%를 공제한 금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나머지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조성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은 매출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할 수 없음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초과~80%이하) 사업단 총매출에서 직접사업비의 70%를 공제한 금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나머지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조성 • (60% 초과~70%이하) 사업단 총매출에서 직접사업비의 50%를 공제한 금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나머지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조성 • (60%이하) 사업단 총매출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나머지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조성 - 수익금..(중략)(삭제) ● 정산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사업비 정의) 재료비, 초과·휴일근무 수당에 한하며, 그 외 사업비는 정부지원 사업비와 활성화지원금에서 사용 - 정산 후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시 원단 위 절사한 후 잔액은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적립 ● 분기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로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예산서에 따라 사용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 ● 연초에 전년도 분기별로 정산한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조성 결과보고와 당해 연도 예산서(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사용 계획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역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고 지자체 승인 후 분기별 정산 후 사용 ●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연도말 잔액은 차기년도에 한해 이월 사용 가능
매출 보고 (p.101)	<p>4 매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마다 매출액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수익금 적립통장으로 이관하고, 	<p>4 매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마다 매출액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고, 연초에 지자체 승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나머지 매출액은 정산전까지 사업비로 계속 재투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에는 매출액에서 결산한 정부지원 사업비 만큼을 매출적립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 ● 수익금의 적립은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보통예금·정기예금 등으로 하며, 수익금 적립·사용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말 기준 사업단별 [자활서식 37호] 수익금 발생현황 및 통장 사본을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매출금의 적립 및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의 관리·운영에 소홀하거나 잘못이 있는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위탁의 취소·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p>인받은 예산서에 따라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로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삭제) ●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말 기준 사업단별 [자활서식 37호] 매출액 발생현황 및 통장 사본을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매출금의 적립 및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매출액의 관리·운영에 소홀하거나 잘못이 있는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위탁의 취소·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매출액은 분기별 정산시 지자체에 보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
<p>시행 경과조치 (p.102) (신설)</p>	<p>2. 당해연도 매출액의 활용 (추가)</p>	<p>2. 매출액의 활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에 발생한 매출액의 사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하반기 지침 개정안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시행은 '19년 10월 매출 정산부터 적용하며, '19년 9월까지 정산한 적립금은 각각의 사용원칙에 따라 활용 ● 적립금 항목별 사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적립금/내일키움장려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매출적립금/창업자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창업시까지 보유. 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사용, 미창업시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매출적립금/활성화자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지자체 승인받아 사용 가능 </div>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1 사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 (추가) ● (추가) <p>2 사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기존 정산방식으로 지원 - (수익금/자립성과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지급 - (수익잉여금) '19년 9월, 최종 정산 후 창업시까지 보유. 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사용, 미창업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정보시스템 사용 - 매출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편기간 동안 매출 정산 수기 작성하고, 개편 완료 후 소급 입력 <p>1 사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중 발생한 매출액 중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매출액의 70%)는 사용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 ● 분기별로 매출액을 정산하여 사용 ● 지자체(시·군·구) 승인을 받아 사업단별 또는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사용 가능 <p>예) A 지역자활센터는 5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고, 각 사업단별로 매출액을 관리하고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게만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단별 사용)</p> <p>B 지역자활센터는 3개 사업단을 운영 중으로, 3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을 모아서 참여자에게 균등하게 인센티브를 지급(센터별 사용)</p> <p>2 사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 ● 직접사업비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인건비 등으로 사용불가)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내일키움수익금)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3 (추가)</p>	<p>3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사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비 관리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내역을 구성하되 지자체(시·군·구) 승인을 받아서 사용 ● 자립성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성과금 최대 월 70만원(분기 210만원)까지 지급 가능 하되, 다음 분기에 자활급여 지급시기에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 - 참여일수 및 센터에서 자체 실시한 참여자 기여도 평가에 따라 자립성과금에 대한 차등을 줄 수 있음 * 소득인정액 산출시 자활소득에 반영되지 않음('19년 1월 이후 발생한 사업단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자립성과금부터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 해당 사업단에서 지급 예정인 자립성과금을 초과하여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자활사업 지원비 관리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직접 사업비</th> <th style="width: 20%;">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th> <th style="width: 20%;">참여자 인센티브</th> </tr> </thead> <tbody> <tr> <td>사용 단위</td> <td>사업단별 관리</td> <td>사업단 공동사용</td> <td>사업단별 또는 사업단 공동 관리</td> </tr> <tr> <td>주요 용도</td> <td>· 재료비 · 초과수당 · 휴일수당</td> <td>· 운영비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반 비용</td> <td>· 내일키움 수익금 · 자립성과금</td> </tr> <tr> <td>총당·적립 시점</td> <td>분기내 사용</td> <td>분기말</td> <td>분기말</td> </tr> </tbody> </table>	구분	직접 사업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참여자 인센티브	사용 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 공동사용	사업단별 또는 사업단 공동 관리	주요 용도	· 재료비 · 초과수당 · 휴일수당	· 운영비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반 비용	· 내일키움 수익금 · 자립성과금	총당·적립 시점	분기내 사용	분기말	분기말
구분	직접 사업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참여자 인센티브															
사용 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 공동사용	사업단별 또는 사업단 공동 관리															
주요 용도	· 재료비 · 초과수당 · 휴일수당	· 운영비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반 비용	· 내일키움 수익금 · 자립성과금															
총당·적립 시점	분기내 사용	분기말	분기말															
<p>매출액의 사용 (p.103~108)</p>	<p>3. 매출적립금의 사용</p>	<p>※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의 사용은 '19년 3분기까지 적용</p>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창업자금 (p.104)	<p>3. <u>매출적립금의 사용</u></p> <p>2 사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p>-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인정일로부터 <u>1년</u> 간 사용 가능(인건비 사용 불가)하고, 사용 완료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 보장기관에 보고</p>	<p>3. <u>기존 매출적립금의 사용</u></p> <p>2 사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창업자금 - '19년 3분기까지만 적립 - 기 적립 자활기업창업자금 사용: 기존 자활기업창업자금 사용원칙: 기 적립(~'19년 9월)된 창업자금은 현행 지침에 따라 지자체 승인 후 우선 사용하며, - 지방기금에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 후 집행에 따라 사용가능 - 중앙자산키움펀드에 신청하여 지자체(1차)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2차)의 심사 후 집행에 따라 사용 가능 - 용도 및 추가지원 항목 • 전세자금 및 점포임대료, 시설 장비 등은 융자(무이자)로 지원 가능 • 재료비, 인테리어비용, 기타 사업비는 무상지원 가능 <p>-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인정일로부터 <u>1년6개월</u> 간 사용 가능(인건비 사용불가)하고, 사용 완료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 보장기관에 보고</p>			
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 매출관리 (p.182 ~P183)	<p>4 매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매출적립금 사용 비율</u> - <u>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사용</u> - <u>매출적립금의 30%를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을 활용</u> - <u>매출적립금의 50%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용</u> - <u>분기별 매출액 정산 시 매출적립액 부족분은 다음 분기에 충당하여 매출적립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u> <p>* (추가)</p> <table border="1" data-bbox="323 1877 818 1955"> <tr> <td>내일키움 장려금</td> <td>자활기업창업 자금</td> <td>지역자활센터 운영비</td> </tr> </table>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창업 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p>4 매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매출 정산</u> - <u>매출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u> - <u>기존 적립된 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창업 시 사용하거나 지역자활센터 시설보강 및 사업개발비로 사용</u> - <u>매출의 80%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활용하되,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u> <p>* <u>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비 사용방안' 지침을 준용</u></p> <div data-bbox="876 1877 1370 197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u>표 삭제</u></p> </div>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창업 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내일키움장려금</u> ● <u>자활기업 창업자금</u> ● <u>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삭제) ● (삭제)
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P183하단 ~184)	<p>5 지역자활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매출적립금 중 <u>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u>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매출적립금 중 50%,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는 <u>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며 성과평가를 통해서 적정관리</u> ● ~ 공통 회계 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매 반기 결산 후 <u>중앙자활센터에 보고하여야 함</u> ● 직원 임용, 인정경력 산정, 직제 및 보수규정은 자활사업안내를 참조하되 <u>사회적협동조합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u> -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직원의 역할,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u>정하되, 직원개인의 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u> 	<p>5 지역자활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u>매출액 중 20%인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u> ● <u>매출액의 80%로 사용하는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는 사용계획을 지자체 사전승인</u> ● ~ 공통 회계 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매 반기 결산 후 <u>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함</u> ● 직원 임용, 인정경력 산정, 직제 및 보수규정은 자활사업안내를 참조하되 <u>사회적협동조합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u> -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직원의 역할,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u>지역자활사업지원비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지역자활센터 봉급표 및 수당을 초과하는 초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 및 시,도 승인을 거쳐야하며, 지자체는 해당사항을 보건복지부 보고</u>

4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기금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 키움펀드 적립 (p.100) (p.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의 적립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의 적립 -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현금 및 물품의 경우 사업단 해체시 매각절차 이후 기여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 (사업단 해체의 경우) (p.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단의 해체시 차량 등 재산은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환수함 ● <u>시장진입형사업단이 연도 중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u>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단의 해체 시 차량 등 재산은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삭제) ● <u>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중 정부사업비로 구매한 물품 매각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매각대금</u> ● <u>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참여자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산(사업단 해체 후 3개월내)하여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존의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의 경우도 포함하여 정산</u> ※ <u>자활근로사업단에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추가 적립 가능</u> ● <u>전년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해지를 통해 환수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2019년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p.61 참고)</u> ● <u>자활기업 해체의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존 매출적립금(기존의 수익금 포함)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해체된 경우 자활기업의 매출적립금품</u> * <u>현금성 자산(전세자금, 부동산 등)은 명의 전환 불가, 자활기업 폐업 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는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적립비율에 따라 중기펀드/자활기금으로 조성</u>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 (추가)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창업자금 지원금 잔액</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활기업 창업 1년 6개월 경과 후 매출 적립금(수익금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 증 잔액</u> ● <u>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지원받은 현금 물품 및 자활기업의 월세, 물품대금, 기타 채무 등의 정산 후의 잔액</u> ● <u>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 시 적립항목 및 금액을 기재하여 정산내역 또는 지자체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 발송</u> ● <u>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관리 전반의 운영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연 4회 보건복지부에 보고</u>

2

내일키움 통장 지침 개정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지원개요 (p.46)	<p>지원개요</p> <p>○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성실참여 +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p>	<p>지원개요</p> <p>○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 +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성실참여 +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p>
지원개요 (p.46)	<p>①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p> <p>② 매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p> <p>③ 내일키움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p> <p>④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p> <p>※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p>	<p>①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p> <p>② 매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p> <p>③ 내일키움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p> <p>④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p> <p>※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p>
본인 저축액 (p.47)	<p>○ (본인부담)가입당사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p>	<p>○ (본인부담)가입당사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p>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p.47)	<p>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지원</p>	<p>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지원, 본인 저축액 2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0만원 매칭 지원</p>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전원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전원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은 1:1 매칭, 본인저축액 20만원은 10만원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지원 (p.47)	내일키움장려금 ①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중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을 재원으로 활용 * 분기별 가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이체	내일키움장려금 ①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 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p.48)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중 참여자 인센티브에서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가입자에게 배분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p.48)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p> <p>☑ 분기별 가정산 시(매분기 적립이체)</p> <p>①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7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p> <p>☑ 연말 정산 시</p> <p>① 연말 정산 시 우선 매출적립금 확보</p> <p>② 매출적립금 확보 후 남은 금액을 통해 1~3분기 나머지(30%)와 4분기100%를 적립 배분하여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p> <p>* 내일키움수익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 연도중에 해지자(전출자 포함)는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인 70%만 지급하거나 환수, 전출 이관함.</p>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p> <p>☑ 정산 시(매분기 적립이체)</p> <p>①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p> <p>☑ 삭제</p> </div>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p.49)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내일키움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적립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 분기별 가정산 시 해당 금액의 7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연말정산 후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내일키움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에서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분기별 진정산시 해당 금액의 10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div>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4분기에 100% 적립</p> <p>☞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자립성과금 월 20만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다음 분기로 이월</p> <p>((예) 매분기 90만원의 수익금 발생 시(내일키움수익금 50%이하, 자립성과금 50%이하)</p> <p>⇒ (1~3분기 가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70%인 31.5만원을 자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적립 (연말정산 시) 1~3분기의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30%인 40.5만원 (분기별 13.5만원)과 4분기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100%인 45만원의 총합 85.5만원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적립</p> <p>⇒ 1~3분기에는 가정산시 자립성과금 40.5만원을 참여자별 지급, 연말정산 시에는 자립성과금 58.5만원 참여자 지급</p> <table border="1" data-bbox="343 1153 842 1451"> <thead> <tr> <th>(단위: 만원)</th> <th>계</th> <th>1분기</th> <th>2분기</th> <th>3분기</th> <th>4분기</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수익금(A)</td> <td>360</td> <td>90</td> <td>90</td> <td>90</td> <td>90</td> <td></td> </tr> <tr> <td>내일키움 수익금 (A×0.5)</td> <td>180</td> <td>31.5</td> <td>31.5</td> <td>31.5</td> <td>85.5</td> <td>1~3분기70%</td> </tr> <tr> <td>자립성과금 (A×0.5)</td> <td>180</td> <td>40.5</td> <td>40.5</td> <td>40.5</td> <td>58.5</td> <td>1~3분기9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수익금 활용 방법 ></p> <table border="1" data-bbox="335 1523 842 1921"> <thead> <tr> <th>구분</th> <th>내일키움수익금</th> <th>자립성과금</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단위</td> <td>사업단별 관리</td> <td>사업단별 관리</td> </tr> <tr> <td>사용비율</td> <td>50%</td> <td>50%</td> </tr> <tr> <td>적립한도 (분기)</td> <td>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월15만원×3개월</td> <td>사업단 참여자수 ×분기60만원×1분기</td> </tr> <tr> <td>주요용도</td> <td>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td> <td>사업단 참여자 지원</td> </tr> <tr> <td>지원시점</td> <td>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 시</td> <td>분기별</td> </tr> </tbody> </table>	(단위: 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수익금(A)	360	90	90	90	90		내일키움 수익금 (A×0.5)	180	31.5	31.5	31.5	85.5	1~3분기70%	자립성과금 (A×0.5)	180	40.5	40.5	40.5	58.5	1~3분기90%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별 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분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월15만원×3개월	사업단 참여자수 ×분기60만원×1분기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사업단 참여자 지원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 시	분기별	<p>☞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임.</p> <p>*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I) <u>참고</u></p> <p><u>삭제</u></p>
(단위: 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수익금(A)	360	90	90	90	90																																											
내일키움 수익금 (A×0.5)	180	31.5	31.5	31.5	85.5	1~3분기70%																																										
자립성과금 (A×0.5)	180	40.5	40.5	40.5	58.5	1~3분기90%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별 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분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월15만원×3개월	사업단 참여자수 ×분기60만원×1분기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사업단 참여자 지원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 시	분기별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내일키움통장 흐름도 (p.50)	본인(5/10/2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5/10만원 1:1, 20만원 10만원)																																	
지원기준 지급해지 (p.52)	※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내일근로장려금은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만 일부지급해지(차상위포함**)	※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3년 만기 도달하였으나 지급해지 요건(탈수급 또는 취창업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 일부지급해지(차상위포함**)																																
지원기준 지급해지 (p.52)		<신설> ※ 3년 만기 도달하였으나 지급해지 요건(탈수급 또는 취창업)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2019.10월 현재 유지자 및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해지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p.54)	<p style="text-align: center;">【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상세유형</th> <th>지급액</th> <th>적용 금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급해지*</td> <td>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td> <td>●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td> <td rowspan="2">●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td> </tr> <tr> <td>자격증 취득</td> <td></td> </tr> <tr> <td rowspan="2">일부지급해지</td> <td>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td> <td></td> <td rowspan="2">●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td> </tr> <tr> <td>연령 초과 (만 65세이상)**</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	자격증 취득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 (만 65세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상세유형</th> <th>지급액</th> <th>적용 금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지급해지*</td> <td>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td> <td>●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td> <td rowspan="3">●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td> </tr> <tr> <td>자격증 취득</td> <td></td> </tr> <tr> <td>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td> <td></td> </tr> <tr> <td>일부지급해지</td> <td>3년 만기</td> <td>●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	자격증 취득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																															
	자격증 취득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 (만 65세이상)**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탈수급 (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적립금 만 최소 약정이율 적용이 자 지급																															
	자격증 취득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환수 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적립금 해당 기간 별 중도 해지 이율 	환수 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적립금 해당 기간 별 중도 해지 이율
지원절차 내일키움수 익금 관리 (p.59~61)	<p>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p> <p>① 금액정산(자활근로사업단별)</p> <p>* 성실참여 = 당월 본인적금 납입+전월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p> <p>-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산·관리</p> <p>- 1인1월 기준액 계산식 : (수익금의 50%)÷{3회(성실참여)×인원수}+ [2회(성실참여)×인원수]+[1회(성실참여)×인원수]</p> <p>* 소수점 이하 절사</p> <p>** 1월 최대 15만원 적립이 가능하므로 15만원보다 크다면 1인1월 기준액은 15만원임</p> <p>*** 사업단의 수익금이 많은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되는 내일키움수익금 총합이 수익금의 50%보다 적을 수 있음</p> <p>- 1인1분기 적립금액의 계산식 : (1월 기준액)×(당분기 성실참여횟수)</p> <p>* 내일키움수익금 기준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절사된 금액은 매출잔액 또는 수익잉여금으로 합산</p> <p>- 1인1분기 적립금액의 70%(확정금액)</p>			<p>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p> <p>① 금액정산(자활근로사업단별)</p> <p>* 성실참여 = 당월 본인적금 납입+전월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p> <p>** 1개월 최대 15만원 적립</p> <p>삭제</p>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계산식 : (1인1분기적립금액)×0.7</p> <p>* 개인별 적립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원단위 절사된 금액은 유보액인 30%에 합산</p> <p>- 진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 적립(70%)과 남은 금액(30%) 처리 방법</p> <p>* 진정산은 연도말, 연도중 사업단 유형변경/해체/자활기업창업으로 인한 사업단정리(일부 참여자 자활기업 창업 포함) 시 동일</p> <p>: 매출적립금이 사업비보다 적은 경우 다음의 순으로 총당함</p> <p>㉠ 수익잉여금에서 총당</p> <p>㉢ 통장 해지(전출) 및 사업단 변경자의 남은 금액(30%) 중 최근 분기(4→3→2→1)순으로 총당</p> <p>㉡ 통장 가입유지자의 남은 금액(30%) 중 최근 분기(3→2→1)순으로 총당</p> <p>* 단, 가입유지자에게 배분된 1~3분기 70%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매출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손실 처리(자립성과금도 동일한 순으로 적용)</p> <p>- 매출적립금을 총당하고 남은 경우 연도중 해지나 전출자, 사업단 변경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중 남은 금액(30%)에 대해서는 참여 분기별로 남아있는 유지자에게 참여 기여도에 따라 분기별 정산하여 배분</p> <p>* 단, 월 15만원 이내로 적립 지급하며 남은 금액은 수익잉여금 처리(자립성과금도 동일하게 적용)</p>	
<p>지원절차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p.59~61)</p>	<p>② 적립방법</p> <p>- 매분기 가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u>70%</u> 이체</p> <p>- 4분기 진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1~3분기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30% 및 4분기 내일키움수익</p>	<p>② 적립방법</p> <p>- 매분기 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100% 이체</p> <p>- 삭제</p>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금의 100%를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p> <p>* 매출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해야함(1·4·7·10월)</p> <p>-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30% 및 해당 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의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p> <p>③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p> <p>- ((일부)지급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p> <p>- (환수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연말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p> <p>* 적립비율은 「2019년 자활사업안내 I」 참고</p>	<p>* 매출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해야함(1·4·7·10월)</p> <p>-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p> <p>③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p> <p>- ((일부)지급 해지) 가입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p> <p>- (환수 해지) 가입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연말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p> <p>* 적립비율은 「2019년 자활사업안내 I」 참고</p>
FAQ (p.53)	<p>⑪ 내일키움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익년도 1월15일까지 정산이 곤란합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 등의 정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법인세가 익년 3월말, 5월말 소득세가 결산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세전 잉여금으로 수익금을 결산할 경우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p> <p>⑪ 매년 1월15일까지 정산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세, 소득세 등은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p>	삭제
FAQ (p.53)	<p>⑫.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은 보장기관(지자체)에 분기별 매출(가)정산내용을 보고하고, 매출적립금의 20%에 해당되</p>	삭제

구분	'19년 지침(현행)	'19년 하반기지침(개정)
	<p>는 내일키움장려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지자체)에 사전 사용 승인 처리를 해야 하는지?</p> <p> 12 매년 1월 15일까지 정산하셔야 합니다.</p> <p>단, 법인세, 소득세 등은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p>	
<p>자활근로사업 (운영) (p58~59)</p>	<p> 15.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은 보장기관(지자체)에 분기별 매출(가)정산내용을 보고하고, 매출적립금의 20%에 해당되는 내일키움장려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지자체)에 사전 사용 승인 처리를 해야 하는지?</p> <p> 12 매년 1월 15일까지 정산하셔야 합니다.</p> <p>단, 법인세, 소득세 등은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p>	<p>삭제</p>

[자활서식 36호] 매출액 정산 예시

<투입액>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지원 예산	계		1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인건비	70만원X10명X3월	84,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사업비	정부지원예산 30%	36,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매출액>

구분	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분기별생산물 및 용역판매대금 총액	45,000,000	12,000,000	8,000,000	10,000,000	15,000,000

<매출관련정산>

구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분기별	판매대금	45,000,000	12,000,000 ¹⁾	8,000,000	10,000,000	15,000,000	
	누계		45,000,000	12,000,000	20,000,000	30,000,000	45,000,000	
중앙자산 기움펀드	분기별	매출액의 30%	11,205,000	3,600,000	2,400,000	705,000	4,500,000	
	누계		11,205,000	3,600,000	6,000,000	6,705,000	11,205,000	
지역자활 사업지원비	분기별	매출액의 70%	33,795,000	8,400,000	5,600,000	9,295,000	10,500,000	
	누계		33,795,000	8,400,000	14,000,000	23,295,000	33,795,000	
	직접 사업비	재료비	원자재비	9,500,000	0	0	8,500,000 ²⁾	1,000,000 ³⁾
		초과, 휴일 근무수 당	매출액지출금액	1,000,000	500,000	0	0	500,000
			활성화지원금		14,695,000	6,000,000	2,600,000	795,000
	참여자 인센티 브	자립성 과금	월 최대70만원	5,900,000	1,000,000	2,100,000	0	2,800,000
내일키 움수익 금		월 최대15만원	2,700,000	900,000	900,000	0	900,000	

1)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앙자산기움펀드(30%), 지역자활사업지원비(70%) 정산

2) 직접사업비가 분기별 매출액의 80% 초과인 경우, 사용한 금액의 90%를 매출액에서 공제한 잔액 을 기준으로 중앙자산 기움펀드(30%), 지역자활사업지원비(70%) 정산

3) 직접사업비가 분기별 매출액의 60% 이하인 경우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앙자산기움펀드 (30%), 지역자활사업지원비(70%) 정산

[자활서식 37호] 매출관련 보고서식

I. 센터(사업단별) 매출액 정산 현황

()센터(사업단) (단위 : 원)

구분	정부 지원사업비	매출액	증상 자카오편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이월금 (누계)
				계	직접사업비			활성화 지원금	참여자 인센티브			
					계	재료비	초과 · 휴일 근무 수당		계	성과금	내일 키움 수익금	
누 계												
<u>1분기</u>												
<u>2분기</u>												
<u>3분기</u>												
<u>4분기</u>												

*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센터(사업단) 특성에 맞게 항목 기재